

소방생활법률-6

## 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교육

※ 소방생활법률에서는 일상 또는 업무 중에 자주 접하게 되는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 관련 판례 등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일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소방대상물에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 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관리 교육 실시 의무

일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자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 ◇ 소방훈련 등 실시 대상

-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중에서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함)이 10명 이하인 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입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등(「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제조소 등을 말함, 이하 같음),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

가.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의 1.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

가.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공동주택

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 소방훈련 등 실시 방법

-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관리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한 후에는 그 결과를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에 기재하고, 그 기록부를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별지 제20호서식).

### ◇ 위반 시 제재

- 소방훈련 및 방화관리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8호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자목).